연구윤리규정

제정 2016.02.01 1차 개정 2018.06.01

제1장 총 칙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우송정보대학(이하 "본 대학"이라 한다.)의 연구윤리 및 진실 성 확보를 위한 절차와 그 업무수행을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적용대상) 이 규정은 대학의 연구개발 활동에 직·간접적으로 참여하였거나 관련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.
- 제3조(연구부정행위의 범위) 연구부정행위(이하 부정행위라 한다)라 함은 연구의 제안 및 수행,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.
 - 1.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위조 행위
 - 2.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변조 행위
 - 3. 타인의 아이디어,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표절 행위
 - 4.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,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
 - 5.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
 - 6.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
 - 7. 기타 위원회에서 자체적인 조사 또는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정행위
- **제4조**(용어의 정의) ①제보자 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하고 관련 증거를 본교 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.
 - ②피조사자 라 함은 제보 또는 위원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,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.
 - ③예비조사 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말한다.
 - ④본 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을 조사하는 절차를 말한다.
 - ⑤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.

제2장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

- **제5조**(기능)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.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 - 1.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
 - 2.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
 - 3.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판정, 승인에 관한 사항
 - 4. 제보자 및 피조사자 보호에 관한 사항
 - 5.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
 - 6.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
- 제6조(구성)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내외로 구성한다.
 - ②위원회는 산학협력단장, 교무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원은 총장이 위촉한다. <개정 2018.6.1.>
 - ③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 되며, 위원회를 대표한다.
 - ④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며,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 - ⑤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, 산학협력단 연구지원팀장으로 한다.
- 제7조(회의)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 -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다.
 - ③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.
 - ④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3장 연구진실성 검증

- 제8조(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) 제보자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하며,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9조(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등) ①위원장은 부정행위에 대한 제보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3인 이내의 위원으로 예비조사팀을 구성한다.
 - ②예비조사는 제보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고, 예비조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본조사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 - ③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다.
 - 1. 제보내용이 제3조 각 호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
 - 2.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

- 3. 제보일이 시효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
- 제10조(예비조사 결과의 보고) ①예비조사 결과는 위원회의 의결 후 10일 이내에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한다. 다만 제보내용이 허위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 - ②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1.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
 - 2.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사실
 - 3.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
 - 4. 기타 관련 증거 자료
- 제11조(본조사의 실시 및 방법 등) ①본 조사는 위원회의 본 조사실시 결정 후 30일 이내에 착수하며, 이 기간 동안 본 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(이하 "조사위원회"라한다.)를 구성하여야 한다.
 - ②본조사는 조사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한다.
 - ③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.
- 제12조(조사위원회의 구성) ①조사위원회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- ②조사위원회 위원구성 및 위촉기간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조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 - ③조사위원회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2인 이상 포함 하며,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인사를 위촉할 수 있다.
 - ④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.
- 제13조(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) ①조사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.
 - ②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, 해당 연구자료의 압수보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- 제14조(제보자의 권리보호) ①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하여야 하며,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공개해서는 안 된다.
 - ②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, 근무조건상의 차별,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.
 - ③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, 사안에 따라 관련 사실을 해당 소속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. ④제보·조사·심의·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을 비밀로 하며, 조사에 직·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총장과 관계직원은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안된다. 다만, 합당한 공개의

필요성이 있는 겨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 할 수 있다.

- 제15조(피조사자의 권리보호)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,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16조(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)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,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하다.
- 제17조(본조사결과보고서의 제출) ①조사위원회는 본 조사 종료 후 본 조사결과 보고서 (이하 "최종보고서"라 한다.)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② 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1.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
 - 2.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사실
 - 3. 해당 연구과제에서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사실 여부
 - 4. 관련 증거 및 증인
 - 5.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 결과
 - 6. 조사위원 명단
 - 7. 기타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
- 제18조 (판정) ①위원회는 최종보고서의 조사결과를 확정, 총장에게 보고하고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 - ②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제19조 (재심의)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 할 수 있다. 재심의에 관한사항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.

제4장 검증 이후의 조치

- 제20조(연구지원기관 등에 대한 보고) ①최종보고서는 판정 후 10일 이내에 해당 연구 과제를 지원한 기관에 제출하며, 상급기관 등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.
 -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과정 중에라도 즉시 연구지원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.
 - 1. 법령 또는 해당 규칙에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
 - 2.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
 - 3. 그 밖의 연구지원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
- 제21조(결과에 대한 조치) ①위원회는 본교 소속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해 총장에게 징계조치를 건의할 수 있으며, 외부인인 경우 해당 기관장에게 통보한다.
 - ②징계조치에 관한 사항은 관련 규정에 의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- 제22조(기록의 보관) 예비조사 및 본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 하여야 한다.
- 제23조(운영세칙)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하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